

# 국제협력진흥원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

진흥원의 경영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·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진흥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

## 1 인권영향평가 개요

### ① 2024년 개선과제 추진현황 평가

- 2025 중점 보완사항

평가지표		담당부서
⑩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	이행과제	
- 갑질 근절	- 교육훈련으로 관리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사례별 대응 지침 교육 필요	전략사업팀

- 평가기준

- 각 지표별 추진실적이 기준내용을 충족하는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하여 개선과제 이행 여부 평가

구분	평가방법
증빙자료	◦ 지표 내용에 해당하는 시행내용 증빙자료 자료를 작성
예	◦ 현황 내용이 해당 지표 내용과 일치하며 시행내용 증빙자료 명확한 경우
보완필요	◦ 현황 내용에 보완을 거치면 ‘예’로 답할 수 있는 경우 ◦ 증빙자료가 있으나 근거내용이 불명확한 경우
아니요	◦ 증빙 내용이 해당 지표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

### ② 2025년 ‘기관운영’, ‘주요사업’ 인권영향평가

- 평가대상

- (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) 10개 분야, 27개 중분류, 101개 지표
  -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, 고용상의 비차별,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보장, 강제노동의 금지 등
- (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) 3개 사업, 3개 중분야, 12개 지표
  - 해외 교류사업, 전북도민 국제화 역량 강화 사업, 외국인 친화 사업

## ○ 평가기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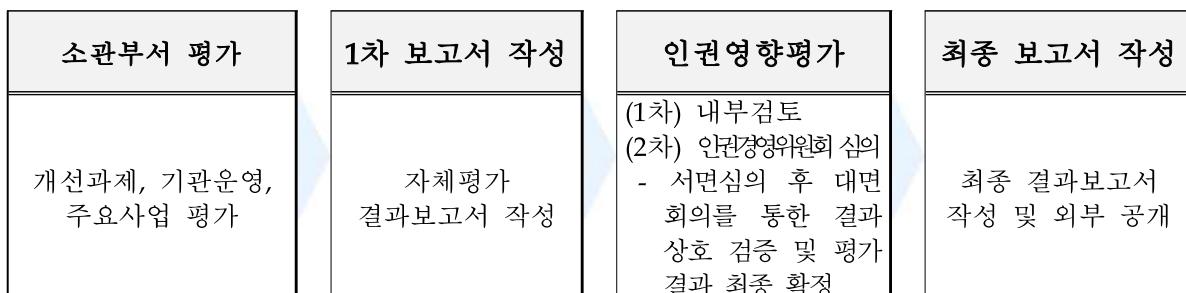
- (1차) 2025년 11월 3일(월) ~ 11월 14일(금)
- (2차) 2025년 11월 24일(월)

## ○ 평가방법

- (1차) 분야별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점검
  - 소관부서 자체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
- (2차)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 확정
  - 서면심의 후 대면 회의를 통한 최종 평가 확정

구 분	1차	2차
방 법	소관부서 점검·평가	1차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서 최종 평가
주 체	해당 주관부서	인권경영위원회
내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◦ 개선과제 이행사항 점검 및 증빙 자료 제출</li><li>◦ 자체평가 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◦ '24년 개선과제 이행 결과 평가</li><li>◦ 체크리스트 자체 평가 결과 타당성 검토 및 수정</li><li>◦ 취약요인 및 개선·보완 사항 제언 등</li></ul>

## ○ 평가절차



## ○ 평가기준

- 각 지표별 추진실적이 기준내용을 충족하는 정도를 3단계로 구분

구분	예	보완필요	아니오	정보없음	해당없음
점수	2점	1점	0점	평가제외	평가제외

- (기준) 각 지표별 추진실적이 기준내용을 충족하는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하며 체크리스트별 이행률로 평가
- (평가산식) (당해연도 지표별 답변 결과/당해연도 해당지표 합계)×100

## - 평가방법

구분	평가방법	비고
증빙자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표 내용에 해당하는 ① 관련 규정과 ② 시행내용 증빙자료 두가지 자료를 작성</li> <li>부득이하게 두가지 중 하나의 자료만 있는 경우 하나의 내용만 작성</li> </ul>	
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현황 내용이 해당 지표 내용과 일치하며 ① 관련 규정과 ② 시행내용 증빙자료 두 개가 모두 명확한 경우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증빙이 불가능한 경우) 관련 규정 명시만으로 인정</li> <li>(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) '계획서', '결과보고서' 등 증빙자료 제공시 인정</li> </ul> </li> </ul>	
보완필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현황 내용에 보완을 거치면 '예'로 답할 수 있는 경우</li> <li>증빙자료가 있으나 근거내용이 불명확한 경우</li> </ul>	
아니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증빙 내용이 해당 지표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</li> </ul>	
정보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미래에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지표 내용을 증빙할 만한 관련 규정이나 시행내용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</li> </ul>	
해당없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관련 규정이나 시행내용이 없으며 진흥원과 관련 없는 지표 (기관에서 향후 5년간 발생 가능성성이 없는 경우)</li> </ul>	

- 각 분야별 총 득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인권영역별 등급 산출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	7등급	8등급	9등급
평점	100점 ~90점	90점만 ~80점	80점만 ~70점	70점만 ~60점	60점만 ~50점	50점만 ~40점	40점만 ~30점	30점만 ~20점	20점만 ~0점

## □ 지표별 평가위원 구성 및 점수산출

### ○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

구분	평가지표	평가위원	점수	지표담당부서
1	인권경영체계 구축	진흥원 인권담당관	100	기획협력실
2	고용상의 비차별	진흥원 인권담당관	100	
3	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	진흥원 인권담당관	100	
4	강제노동의 금지	진흥원 인권담당관	100	
5	산업안전보장	진흥원 인권담당관	100	
6	책임있는 공급망 관리	진흥원 인권담당관	100	
7	지역주민의 인권보호	진흥원 인권담당관	100	
8	환경권 보장	진흥원 인권담당관	100	
9	소비자 인권보호	진흥원 인권담당관	100	
10	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	진흥원 인권담당관	100	

## ○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

구분	평가지표	평가위원	점수	지표담당부서
1	해외 교류사업	진홍원 인권담당관	100	교류협력실
2	전북도민 국제화 역량 강화 사업	진홍원 인권담당관	100	
3	외국인 친화 사업	진홍원 인권담당관	100	

## 2 2024년 개선과제 평가 결과

▶ 개선과제 평가 결과 이행률 100% 달성으로 나타남

### □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

-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예방을 위해 관리자와 팀원을 나누어 사례별 교육을 진행하였음

## 3 2025년 인권영향평가 결과

### □ 지표별 점수산출 결과

#### ○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

▶ 기관운영 영향평가 결과 이행률 100% 달성으로 나타남

#### ○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

▶ 주요사업 영향평가 결과 이행률 100% 달성으로 나타남

### □ 평가결과 활용

#### ○ 환류 및 개선조치

- 인권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취약분야는 개선과제별 업무분장 후 이행실적 관리

#### ○ 인권경영 평가보고서 대외공개

- 인권영향평가 결과, 인권경영체계, 부정적 인권영향 방지조치 수립 및 이행과제 추진 현황 등 투명한 인권경영 및 의견수렴을 위해 최종보고서 홈페이지 공개

## □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

### 【종합의견】

- 진흥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 증진을 위한 개선과제 이행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에 관한 교육을 관리자와 팀원을 나누어 실시하여 직원과 관리직 간의 갑질 인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함
-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인권경영위원회 회의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있음
-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전 직원 및 이해관계자 대상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있음
- 인권실태조사 결과 고충처리제도의 안내 및 고충처리 기대치가 낮은 부분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 등에 대한 근원적 원인개선 과정 마련 필요

## □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

### 【종합의견】

- 외국인 대상 사업 기획 시 ‘전북특별자치도 인권역사현장 지도’를 활용하면 더욱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함
- 사업 운영 시 외국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사 후 그에 특화된 사업을 진행하면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해도 실효성과 만족도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생각함

## □ 기타의견

- 진흥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. 기관의 업무중요도에 비해 지역주민의 인지도가 낮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 아쉬움

## 4

## 개선과제 및 환류체계

### ○ (개선과제) 중점 보완사항 이행

평가지표		담당부서
① 인권경영 체계 구축	이행과제	
- 제도 홍보	- 인권준수를 위한 감시기구 및 제도 운영에 대한 홍보	전략사업팀
- 정보 제공	- 업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통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경감	각 팀

### ○ (환류체계) 중점 보완사항 담당부서별 업무분장 부여

-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인권경영체계 구축 노력
- 차년도 개선실적에 반영하여 인권경영 개선도 향상 제고

**불임****분야별 세부평가 결과****□ 2024년 개선과제 추진현황 평가 결과**

지표명	개선과제	답변결과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
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	진흥원은 관리자 및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(갑질) 예방 사례별 대응 지침 교육을 시행한다.	○			

## □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세부평가 결과

1. 인권경영체제 구축		답변결과					비고
분야 1 인권경영현장 선포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	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점수( )							
1	진홍원의 인권경영현장은 진홍원 내·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적절한 자문을 통해 만들어졌다.	○					
2	진홍원의 인권경영현장은 공개적이며, 모든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었다.	○					
3	인권경영현장은 정기적(3년마다)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.	○					
소 계							
1. 인권경영체제 구축		답변결과					비고
분야 2 인권영향평가의 정기적 실시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	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점수( )							
1	인권영향평가는 국내법 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근거로 한다.	○					
2	인권영향평가 실행 시 진홍원 내·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킨다.	○					
3	진홍원의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또는 집단과의 협의를 한다.	○					
4	협력기관의 활동도 인권영향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킨다.	○					
5	인권영향평가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	○					
소 계							

1. 인권경영체계 구축		답변 결과					비고
분야 3  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 필요 조치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지 표 명							
점수( )							
1	진홍원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다.	○					
2	진홍원은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또는 담당자를 지정한다.	○					
3	진홍원은 인권준수를 위한 감시기구 및 제도를 운영중이다	○					
4	진홍원은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그럴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한다.	○					
5	협력기관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견될 경우, 진홍원 차원에서 대응한다.	○					
6	진홍원은 직원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인권침해 예방과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.	○					
소 계							XX

1. 인권경영체계 구축		답변 결과					비고
분야 4   인권경영 성과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지 표 명							
점수( )							
1	진홍원은 인권경영 성과를 정량적 지표 또는 정성적 평가를 통해 확인한다.	○					
2	진홍원은 인권경영 성과 확인 시 내·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.	○					
3	진홍원은 인권경영 개선 활동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담아 그 성과를 최고경영진에게 보고해야 한다.	○					
4	진홍원의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외부에 공개한다.	○					
5	진홍원의 인권경영 개선 활동에 대한 성과는 객관적이고 적정하다.	○					
6	진홍원의 인권경영 개선 활동에 대한 성과는 인권경영위원회의 검증을 거친다.	○					
소 계							XX

1. 인권경영체제 구축

분야 5 구제절차 마련

지 표 명		답변 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	점수( )						
1	진홍원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제 절차를 제공한다.	○					
2	구제 절차는 국내법 또는 국제법 등 인권규범에 기반을 둔다.	○					
3	구제 절차를 위한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인권침해 유형에 따라 적절한 구제절차를 제공한다.	○					
4	구제 절차에 따른 결과를 사건 관련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.	○					
5	피해자가 진홍원의 구제절차 이외 다른 절차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에 성실하게 조력한다.				○		
6	구제절차는 개별적인 문제해결에 그치지 않고,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.	○					
	소 계						XX

## 2. 고용상의 비차별

### 분야 1 고용상 비차별
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	점수( )						
1	진홍원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, 종교, 장애, 나이, 사회적 신분,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	○					
2	진홍원은 근로자 모집·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.	○					
3	진홍원은 임금에 있어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.	○					
4	진홍원은 복리후생제도에 있어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한다.	○					
5	진홍원은 근로자의 교육·배치 및 승진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.	○					
6	진홍원은 근로자의 정년, 퇴직 및 해고에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.	○					
소 계							☒

## 2. 고용상의 비차별

### 분야 2 고용상 여성근로자의 차별금지
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	점수( )						
1	진홍원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제공한다.	○					
2	진홍원은 임금에 있어서 여성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.	○					
3	진홍원은 복리후생제도에 있어서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한다.	○					
4	진홍원은 근로자의 교육·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.	○					
5	진홍원은 근로자의 정년, 퇴직 및 해고에서 여성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.	○					
6	진홍원은 여성 근로자의 혼인,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.	○					
소 계							☒

## 2. 고용상의 비차별

### 분야 3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
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	점수( )						
1	진홍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장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.	○					
2	진홍원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진홍원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편의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.	○					
3	진홍원은 공정한 임금 체계를 위한 보수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.	○					
	소 계						☒

## 2. 고용상의 비차별

### 분야 4 외국인 근로자 비차별
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	점수( )						
1	진홍원은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지 않는다.	○					
2	진홍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가진 종교적,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.	○					
	소 계						☒

**3.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**

**분야 1 결사·단체교섭 자유 보장 일반**

지 표 명	답변결과					비고
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점수( )						
1 진홍원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한다.	○					
2 진홍원은 노동조합 등을 통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모임을 가지고 근로조건 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	○					
3 진홍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포함하는 근로자 모임을 위해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.	○					
4 진홍원은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대표와 단체 교섭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.					○	
소 계						☒

**3.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**

**분야 2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**

지 표 명	답변결과					비고
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점수( )						
1 진홍원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진홍원은 직원들이 독립적으로 노동 관련 문제를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인 조치를 제공한다.	○					
2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직원들이 노동조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회의실 등 편의를 제공한다.	○					
소 계						☒

**4. 강제 노동의 금지**

**분야 1 강제노동 금지**
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	점수( )						
1	진홍원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.	○					
2	진홍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계약을 위해 노력하며, 근로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.	○					
3	진홍원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의무적 초과 노동을 실시하지 않는다.	○					
4	근로자는 근무시간 이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작업장을 떠날 수 있다.	○					
5	근로자는 퇴사 시 사전통지 또는 의향 표시를 1개월 이전에 하면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.	○					
소 계							☒

**4. 강제 노동의 금지**

**분야 2 협업기관, 용역 수행 업체에 대한 강제노동 예방**
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	점수( )						
1	진홍원은 외국에서 활동하는 협업 기관, 용역수행 업체에서 강제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한다.	○					
2	협업 기관, 용역수행 업체에서 강제노동을 이용하거나 그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, 이를 지속해서 감시한다.	○					
3	인신매매, 채무 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, 기관 등에서 인력을 공급받지 않으며,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.	○					
소 계							☒

## 5. 산업안전 보장

### 분야 1 작업장 안전
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	점수( )						
1	진홍원은 작업장의 안전 보호구와 시설을 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한다.	○					
2	진홍원의 비상탈출구는 장애물로 막혀 있지 않으며, 항상 이용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다.	○					
3	사무실 환기와 실내 온도, 조명, 정수기, 세면대, 의자, 화장실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.	○					
소 계							XX

## 5. 산업안전 보장

### 분야 2 임산부 및 장애인 보호
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	점수( )						
1	진홍원은 임산부, 장애인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위생 조치를 하고 있다.	○					
2	진홍원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, 18세 미만자를 도덕상·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근로시키지 않는다.	○					
3	임신을 한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,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	○					
4	장애인들이 진홍원 내에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.	○					
소 계							XX

**5. 산업안전 보장**

**분야 3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**

지 표 명	점수( )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1	진흥원은 근로자들 대상으로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	○					
2	근로자가 위험한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,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,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한다.	○					
3	사업장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은 관련 전문가를 통해 진행한다.	○					
4	진흥원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·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.	○					
소 계							XX

**5. 산업안전 보장**

**분야 4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**

지 표 명	점수( )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1	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.	○					
2	근로기준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이 필요할 경우 자체없이 보상절차를 진행한다.	○					
소 계							XX

**6.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**

**분야 1 협력기관, 용역 수행 업체 등의 인권침해 예방**
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점수( )							
1	진흥원은 협력 기관, 용역수행 업체 등에 인권 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요구한다.	○					
소 계							☒

**6.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**

**분야 2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**
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점수( )							
1	진흥원은 보안 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.				○		
2	진흥원의 보안 담당 직원은 인권 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.	○					
3	진흥원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,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인권보호 준칙의 준수를 요구한다.					○	
4	진흥원이 보안 사무를 외주하는 경우, 인권보호준칙이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.					○	
소 계							☒

**7. 지역주민의 인권보호**

**분야 1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 보호**
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점수( )							
1	진홍원의 활동에 관해 법령에서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준수한다.	○					
2	진홍원은 토지구매 시 법률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며, 지역주민의 법과 관습에 따른 권리자가 있는지 확인한다.					○	
3	진홍원은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해 심각하게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나 제3자들과 협의를 한다.					○	
소 계							XX

**7. 지역주민의 인권보호**

**분야 2 지역주민의 지적재산권 보호**

지 표 명		답변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점수( )							
1	진홍원은 타인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것이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확인한다.	○					
2	진홍원은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을 확인할 때는 관습적으로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인지 검토한다.	○					
3	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자와 협상할 때는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으며,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.				○		
소 계							XX

**8. 환경권 보장**

**분야 1 환경영영체계 수립 및 유지**

지 표 명		답변 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	점수( )						
1	진홍원은 국내·외 사업 활동뿐 아니라, 사업서비스의 개발과 제공에서 환경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수행한다.	○					
2	진홍원은 환경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교육하고 훈련한다.	○					
3	진홍원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 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	○					
소 계							XXXX

## 9. 소비자 인권 보호

### 분야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

지 표 명		답변 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	점수( )						
1	진홍원은 용역 또는 서비스의 오류로 고객의 재산을 해치지 않기 위해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.	○					
2	진홍원은 고객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정책 및 서비스 정보 등에 관해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.	○					
3	진홍원은 사업 및 서비스 홍보 시 허위나 과장, 부당한 표시·광고를 하지 않는다.	○					
4	진홍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사업 내용, 서비스 등에 대해 필요한 중요정보를 제공한다.	○					
5	사업내용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하며, 지역에 따라 현지어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.	○					
소 계							XX

**9. 소비자 인권 보호**

**분야 2 | 소비자 사생활 보호**

지 표 명		답변 결과					비고
	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점수( )							
1	진홍원은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진홍원이 수집, 저장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.	○					
2	고객정보의 수집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, 공개되어 있다.	○					
3	고객정보의 수집 및 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, 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.	○					
4	고객정보를 수집할 때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고, 자발적 동의를 구한다.	○					
5	고객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.	○					
6	진홍원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.	○					
소 계							

**10.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**

**분야 1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금지**

지 표 명	답변결과					비고
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점수( )						
1 진홍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금지를 위해 예방 교육을 시행한다.	○					
2 진홍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발생 시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다.	○					
3 진홍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실태 파악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한다.	○					
소 계						☒

**10.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**

**분야 2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 금지**

지 표 명	답변결과					비고
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점수( )						
1 진홍원은 성희롱·성폭력 발생 시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다.	○					
2 진홍원은 성희롱·성폭력에 관한 예방교육을 시행한다.	○					
소 계						☒

**10.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대우**

**분야 3 일·가정 양립 및 휴식권 보장**

지 표 명	답변결과					비고
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점수( )						
1 진홍원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한 일·가정 양립 정책을 수립·이행하고 있다.	○					
2 진홍원은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	○					
소 계						☒

## □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세부평가 결과

1. 해외 교류사업		답변결과					비고
분야 1	교류국 주민의 사회·문화적 권리 보장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	지 표 명						
	점수( )						
1	진홍원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류국 주민에게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도의 전통문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.	○					
2	진홍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해외 교류국 주민의 인지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.	○					
3	진홍원은 교류국 주민의 사회·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해 교류국 기관 관계자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.	○					
4	진홍원은 교류국 주민 누구나 한국 문화를 접하고,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.	○					
5	진홍원은 교류국 주민의 한국 유학 및 자아실현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.	○					
6	진홍원은 교류국 주민의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.	○					
소 계							XX

## 2. 전북도민 국제화 역량 강화 사업

### 분야 1 국제화 역량 강화 기회 보장

지 표 명	답변 결과					비고
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점수( )						
1 진홍원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제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.	○					
2 진홍원은 도내 거주 외국인과 전북 도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제화 역량 강화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.	○					
3 진홍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이 세계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전북 글로벌 문화 주간, MY 전북 세계인 축제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.	○					
4 진홍원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전직 외교관 등 전문가를 초빙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.	○					
소 계						☒

## 3. 해외 교류사업

### 분야 1 사업 후속조치

지 표 명	답변 결과					비고
	예	보완 필요	아니요	정보 없음	해당 없음	
점수( )						
1 진홍원은 도내 외국인의 지속 가능한 인권 보장을 위한 후속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.	○					
2 진홍원은 사회통합을 위한 향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.	○					
소 계						☒